

「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·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안내」

관련법령

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·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**공정안전보고서(PSM)**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**제출하여 심사**를 받아야 함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·위험설비란? 7개 업종(원유 정제처리업 등)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설비와 그 외 업종의 사업장에서 PSM 대상 화학물질(별표 13)을 규정량 이상 제조·취급·저장하는 설비

적용시기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·제45조 (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) 및 **별표 13**에 따른 적용시기

-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: 2021년 1월 16일부터
-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: 2021년 7월 16일부터

신규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행령이 적용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
연번	유해·위험물질 명	규정량(kg)		
		기존	개정	조정
1	포스겐	750	500	▼
2	아크릴로니트릴	20,000	10,000	▼
3	암모니아	200,000	10,000	▼
4	염소	20,000	1,500	▼
5	이산화황	250,000	10,000	▼
6	삼산화황	75,000	10,000	▼
7	시아나소	1,000	500	▼
8	염화수소(무수염산)	20,000	10,000	▼
9	수소	50,000	5,000	▼
10	산화에틸렌	10,000	1,000	▼
11	발연황산(삼산화황 중량 65% 이상 80% 미만)	500,000	20,000	▼
12	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	100,000	2,000	▼
13	클로로술폰산	500,000	10,000	▼
14	삼염화인	750,000	10,000	▼
15	염화 벤질	750,000	2,000	▼
16	브롬	100,000	1,000	▼
17	불소	20,000	500	▼
18	디클로로실란	1,500	1,000	▼
19	불산(중량 1% → 10% 이상)	1,000	10,000	▲
20	암모니아수(중량 10% → 20% 이상)	20,000	50,000	▲
21	메틸 이소시아네이트	150	1,000	▲
22	이황화탄소	5,000	10,000	▲
23	포스핀	50	500	▲
24	실란(Silane)	50	1,000	▲
25	질산(중량 94.5% 이상)	250	50,000	▲
26	과산화수소(중량 52% 이상)	3,500	10,000	▲

연번	유해·위험물질 명	규정량(kg)		
		기존	개정	조정
27	브롬화수소	2,500	10,000	▲
28	염화 티오닐	150	10,000	▲
29	일산화질소	1,000	10,000	▲
30	붕소 트리염화물	1,500	10,000	▲
31	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	2,500	10,000	▲
32	삼불화 붕소	150	1,000	▲
33	염소 트리플루오르화	500	1,000	▲
34	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	50	2,000	▲
35	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	2,500	20,000	▲
36	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	2,500	10,000	▲
37	염산(중량 10% → 20% 이상)	20,000	20,000	-
38	황산(중량 10% → 20% 이상)	20,000	20,000	-
39	불화수소(무수불산)	1,000	1,000	-
40	황화수소	1,000	1,000	-
41	질산암모늄	500,000	500,000	-
42	니트로글리세린	10,000	10,000	-
43	트리니트로톨루엔	50,000	50,000	-
44	이산화염소	500	500	-
45	니트로아닐린	2,500	2,500	-
46	니트로 셀룰로오스(질소 함유량 12.6% 이상)	100,000	100,000	-
47	과산화벤조일	3,500	3,500	-
48	과염소산 암모늄	3,500	3,500	-
49	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	3,500	3,500	-
50	인화성 가스*	제조·취급: 5,000 저장: 200,000	제조·취급: 5,000 저장: 200,000	-
51	인화성 액체	제조·취급: 5,000 저장: 200,000	제조·취급: 5,000 저장: 200,000	-

* 인화성 가스 중 도시가스의 경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저압(계기압력 0.1MPa 미만)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취급 규정량(50,000kg) 완화 ▼ 규정량 강화 ▲ 규정량 완화